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준]

목 차

1	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
2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례안	12
4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2. 20.

나. 발 의 자 :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

(신중양,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4. 2. 20.

2.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3조)

나. 정기점검·긴급점검·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안 제4조 ~ 제6조)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지원(안 제7조)

라. 안전진단 대상(안 제8조)

마.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바. 건축물 해체신고·허가 대상(안 제10조 ~ 제11조)
- 사. 현장점검 및 대행 수수료(안 제12조 ~ 제13조)
- 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안 제14조)
- 자.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안 제1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법」 제15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도시건축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2. 8. ~ 2024. 2. 1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물 정기 점검 등의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건축물의 해체, 빈 건축물의 정비 등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건축물 생애기간 동안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로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지원

나. 관련 조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지원(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이내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군비	20	20	20	20	20	100

1) 1년 평균 지원기준: 1호, 호당 최대 20백만원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관 련 법 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6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2. 대상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3.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고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2. 20.

나. 발 의 자 :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김향란,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4. 2. 20.

2. 제안이유

○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거창군에 유입 하는 인구에 보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조례에 맞게 제명을 ‘빈집정비’에서 ‘빈집정비 및 활용’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조례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1조)

- 다.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라. 빈집정비의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마.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4조, 제64조2, 제67조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건축과, 행복농촌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2. 15 ~ 2024. 2.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빈집정비 비용지원의 범위를 빈집 정비 후 군의 활용에 동의할 경우를 추가하고 빈집의 활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빈집 정비와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용어를 정비하여 그 뜻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빈집정비 지원

나. 관련 조문: 빈집정비 지원(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군비	104,100	104,100	104,100	104,100	104,100

※도비 확보 시 반영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2024년 예산 기준

사업명	예산액(천원)	사업물량
귀농, 귀향민 주택(빈집) 리모델링 사업	37,500	7동
빈집정비사업(철거)	66,600 ※도비: 19,980	73동

작성자 도시건축과 장봉기



관련 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49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에 따른 농촌과 제2호에 따른 어촌 모두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20. 2. 11.]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20. 2. 11.>

1.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5.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2. 20.

나. 발 의 자 :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김향란,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4. 2. 20.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거창군 학교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우유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나. 학교우유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효율적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제9조
「낙농진흥법」 제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축산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농업축산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2. 13. ~ 2024. 2.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정부에서는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및 우유 음용습관 조기 형성을 위해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가구의 학생 등 저소득층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그동안 무상급식으로 지원되었던 다자녀가구 학생들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학생들에게 군비 무상우유 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학교우유급식의 지원

나. 관련조문 : 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 분	1차 연도 (24년)	2차 연도 (25년)	3차 연도 (26년)	4차 연도 (27년)	5차 연도 (28년)	합계
학교우유급식 지원	569,882	569,882	569,882	569,882	569,882	2,849,41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4,301\text{명} \times 530\text{원} \times 250\text{일} = 569,882\text{천원}$

작성자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김 규 태



관련 법령

□ 학교급식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 10. 17., 2010. 7. 23., 2021. 3. 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 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2. 28.>

□ 낙농진흥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5. 19.>

1.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4.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6.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7.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8.]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10. 24.>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집유(集乳)”란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12.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란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5. 25.]

□ 축산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8. 12. 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2.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2. 20.

2. 제안이유

- 거창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기준가격에서 도매 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지원하여,
- 군 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으로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1) 차액 :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기준 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
- 나. 차액 지원, 지원 및 제외 대상, 신청을 정함(안 제4조~제6조)

- 1) 차액 지원 대상 :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

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를 정함(안 제7조~제15조)

- 1) 기능 : 지원하는 주요 농산물 품목 및 지원범위, 기준가격 결정, 품목별 차액 지급 기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사업 발생시 추경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1. 24.~2.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량 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과 가격등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농업 경영비 증가로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농가소득을 보전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¹⁾을 살펴보면 주요 농산물 중 사과, 딸기, 포도, 양파, 감자의 경우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최근 5년간 주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상품(上品) 기준의 평년가격] 80% 이하로 형성된 경우, 기준가격과 도매시장 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주요 농산물 중 벼의 경우 1등급 기준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기준 수매가격[최근 5년간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 매입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년가격]의 85% 이하로 형성될 경우, 공공비축미 1등 기준수매가격에서 농협자체 수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임.
- 지원 신청을 하려면 계통출하 증명서류 및 농협 자체수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농가별 최고 한도액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음.
- 조례의 제안이유와 내용 검토 결과 거창군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1)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기준가격 결정 및 공고) ①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간 주 출하기 도매시장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상품(上品) 기준의 평년가격. 다만, 벼는 최근 5년간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 매입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년가격이며 찰벼는 최근 5년간 농협자체 매입 기준 매입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년가격
 2. 농업진흥청의 농산물 소득자료, 경남농협이 산정하는 유통비, 그 밖에 현장사항 반영 등
 ② 군수는 매년 기준가격을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첨부 의견으로, 거창군은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장제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을 1) 농가수익 보장 2) 농가조직 육성 3) 정부정책 연계 4)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설정하였는데,²⁾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정책과 현장 및 품목중심의 추진을 위해서는 품목선정, 사업방식, 주 출하시기, 기간, 지원기준, 재원방안, 추진체계, 위원회 구성 등 항목별 내용이 충실하게 진행되어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그 중에서도 사업의 목적과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재원과 관련하여, 유사정책을 시행중인 지자체 65개 중 43개 지자체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이라는 특정분야의 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정과 탄력적인 운영 및 자금 지원을 위한 목적에 비추어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³⁾

○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거나 중간에 정책을 변경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2024년 벼(찰벼), 사과, 딸기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시범사업 계획인데 품목 관리 및 기준 적용, 단계별 확대 추진 농가 및 농민단체와 충분한 사전 설명이 병행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타 지자체의 예를 보면 지역 농축협, 계통출하조직이 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하고 있는 점은 모범사례로 보여지며 거창군은 한우와 양돈이 규모화되어 있고 계통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주요 농산물과 함께 한우, 양돈의 가격안정 지원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거창군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수립 용역(2023.09.) 자료 중, 기준가격보장제 정책 기본방향(P202)

3) 거창군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수립 용역(2023.09.) 자료 중, 기준가격 차액 재원 검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형태별 특징 및 장단점(P124)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기준가격 대비 도매시장가격이 일정부분 이상 하락 시 차액의 일부 혹은 전부 지원
- 나. 관련 조문: 차액 지원(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농작물 가격변동 추이를 예상하기 어려우나 지원 빈도는 10년에 1~2차례 정도 예상
 - 1) 최근 10년간 기준가격 보장제 발동 횟수
 - (가) 사과 2, 벼·찰벼 1, 딸기 1
 - 2) 최근 10년간 지원된 예산
 - (가) 벼 1,370백만원, 찰벼 87백만원
 - (나) 사과 1,762백만원
 - (다) 딸기 792백만원
-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벼	찰벼	사과	딸기	기간
군비	연 1,370	연 87	연 1,762	연 792	2024년~2028년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주요 농산물 기준가격보장 지원 공통기준

- 1) 작물별 주 출하기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일정분 이하로 형성 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2) 품목 구분 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별 300만원 한도

나. 벼·찰벼: 주 출하기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85퍼센트 이하 하락 시

- 1) 전체농가: 벼 5,740농가 찰벼 164농가
- 2) 최근 10년간 발동 빈도
 - (가) 벼 2016년 1차례
 - (나) 찰벼 2022년 1차례

- 3) 벼 kg당 75원 보전 시 1,370백만원
- 4) 찰벼 kg당 75원 보전 시 87백만원

다. 사과·딸기·포도: 주 출하기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80퍼센트 이하 하락 시

- 1) 전체농가: 사과 577농가, 딸기 264농가
- 2) 최근 10년간 발동 빈도
 - (가) 사과 2017년, 2019년 2차례
 - (나) 딸기 2017년 1차례
- 3) 사과 1,762백만원
 - (가) 쓰가루 136백만원
 - (나) 홍로 780백만원
 - (다) 부사 846백만원 등
- 4) 딸기: 설향 792백만원

작성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